

#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79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3. 13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6. 3. 13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6. 3. 25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녹지공원과장 김주화)

#### 가. 개정이유

- 고성군 자연휴양림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료 징수,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(시설사용료, 체험료)에 대한 명시(안 제7조)
- 2) 사용료 감면기준을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으로 변경(안 제8조)
- 3) 자연휴양림의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2조)
- 4) 자연휴양림 체험료 추가(안 별지)

#### 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
- 2)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3)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 - 개선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50039(2025. 12. 24.)호]

#### 4) 기 타

-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5-2091호
  - 예고기간: 2025. 12. 22.~2026. 1. 11.(20일간)
  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#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호철)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자연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 개정 취지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### 5. 토 론: 없음

### 6. 심사결과: 2026. 3. 25. 원안가결

### 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